

제429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여성가족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여성가족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예결위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요구총괄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자료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설명은 소위 심사자료로 대체하고 정부 의견을 듣고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되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여성가족부 소관

(10시)03분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시정요구총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쪽입니다.

시정요구총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징계 1건, 시정 4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7건 등 총 66건과 부대의견 1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의 시정요구유형이 제안된 경우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번 사안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1번,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채무를 변제할 재력이 부족한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채권 회수 위탁을 해서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에도 암류라든지 공매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1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6쪽 2번,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두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현재 중장기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기금의 재원의 확보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2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3번은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과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개선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3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안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8쪽 4번,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 제도를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성과지표 달성을 낮은 사업의 원인 파악하고 특히 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8개 부처는 양성평등담당관 협의체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5번은 성과지표 개선 및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제고 필요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비 예산입니다.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결산 심사자료 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6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6번은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의 적극적인 운영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상설기구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양성평등정책의 조정·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면 중심으로 운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확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6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7번,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해서 권고 이후에 실제로 개선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행률은 한 80%, 86%까지 좀 높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할 때 개선과제 도출하는 과정에서부터 해당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성과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도개선안에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한 예산·인센티브를 지원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만 있고 실제 지자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확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여성친화도시가 10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신청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만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체 재원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보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희 위원** 예산도 확보 안 했으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지자체를 컨설팅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도개선을 수용한다는 취지는 앞으로 컨설팅 예산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제도개선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8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8번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자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 사업이 더 이상 자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해서 집행률을 제고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작년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는 과정 때문에 그해 24년 작년 11월 달에 협의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사업을 재개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시정은 완료된 사항임을 고려해서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의 경우는 작년에 결산을 할 때도 똑같이 지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얘기까지가 거론이 되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으로……

○**소위원장 조은희** 예, 이연희 위원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된 건데 적정성 협의로 이게 집행이 늦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적정성 협의라는 것은 원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전 절차인데 왜 이게 24년도에 기재부와의 적정성 협의를 했다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여성정책국장 조민경입니다.

적정성 검토라는 것은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계획 단계, 중간·실시 설계 이렇게 단계별로 총사업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사업비 협의가 실시설계 전에 이렇게 중간설계에 대해서 24년 11월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24년 작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고 그게 11월에 사업비 협의 끝난 다음

에는 재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기재부가 11월 달에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가 됐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사업이 진척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올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조달……

○이연희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해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착공은 28년 준공을……

○이연희 위원 28년?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이연희 위원 28년 준공?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착공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조은희 예.

○임미애 위원 총사업비 협의라는 게 매 단계마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적정성 협의라는 게 매 단계마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적정성 협의가 기재부하고 도대체 몇 단계에 걸쳐서 어느 시점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사 진행 중에 지하 암반이 나오고 공사비 인상되고 그런 사유로 해서 적정성 검토가 됐는데 그 후에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작년 24년 동안 총사업비 협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총사업비 협의는 기준이 있는데 사실 저희의 공사비나 건립비 인상률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건립비 인상률이 좀 높았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아니요. 그런데 그 기준에는……

○김한규 위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이금순 여성정책과장 이금순입니다.

저희가 중간설계 하고 나서 다시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총사업비가 처음 최초 설계에서 20% 이상이 넘어가면 원래 사업적정성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물가인상을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는 20% 이하 기준으로 맞췄는데 기재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서 그게 좀 늦어지면서 작년에 공사를 못 들어갔습니다.

○이달희 위원 여가부는 20% 이하로 맞췄는데 기재부에서 거기에……

○소위원장 조은희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십시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로 계속해야 된다고 처음에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 단계별로 기재부가 검토하는 게 언제 언제 있느냐라고

여쭤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상임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다 예산 통과 처음 해 가지고 사업 승인을 했는데 기재부가 중간에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예산을 낮추게, 되게 절약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승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 해 예산을 못 쓰게 막아 버리고 이게 기재부가 항상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연초부터 협의를 하면 되는데 기재부가 꼭 연말에 해 가지고 올해 예산 못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다 협의해서 막판에 통과시켰다라고 불만을 갖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기재부는 자기네가 처음부터 정부안으로 집어넣은 예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 가지고 예산을 못 쓰게 하거나 아니면 줄이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혹시 기재부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이금순** 그런데 저희가 계획설계는 22년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설계를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그 중간설계를 마치고 나면 다시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총사업비 협의가 원래 당초 사업비에서, 268억 중에서 물가인상분을 빼고 20%를 증액했을 때 그때 사업적정성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20% 안으로 맞췄는데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연말에 맞췄다보다는 23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완료된 게 24년 10월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제가 여쭤볼게요.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 과정에서 첫 번째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간설계가 23년도 6월 달에 끝나고 중간설계의 결과를 가지고 기재부에 이 사업은 중간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지하에 암반이 나왔고 그 사이에 토목공사비가 원래보다 물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원래 책정된 총사업비로는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좀 늘려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총사업비를 늘리려면 적정성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3년 11월 달에 기재부가 저희한테 적정성 재검토 사업으로 통보를 해 왔고요. 23년 12월부터 작년 24년 11월까지 1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예산 같은 경우는 24년 11월, 연말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24년 예산을 전혀 집행을 하지를 못한 결과이고요.

○**정춘생 위원** 그런데 적정성 재검토가 1년이나 걸렸다고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KDI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KDI가 전문가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연희 위원** 280억짜리 예산을 무슨 1년씩이나 재검토를 해.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그래서 현재는 KDI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가지고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착공은 실시설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 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김한규 위원님의 설명이 저한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소위원장 조은희 제가 시정 의견으로 위원님들 중에 가장 중한 것을 의견을 냈는데요. 저는 작년에는 이연희 위원님하고 이 사업을 가장 서포트했던 입장에서 지금은 여가부의 입장이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부지 측량 결과 가용 부지 면적이 감소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반영이 필요하다는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지하층 추가가 불가피했다는 게 여가부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수장고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런데 여가부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미 검토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기재부 평계만 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적정성 검토 결과를 사업 지연 평계로 이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기재부가 갑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김한규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기재부 갑질에 부처가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굉장히 서포트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가부가 미숙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주의나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위원님, 그런데 지하 암반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게……

○소위원장 조은희 수장고 추가하려고는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수장고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가분 의견이 있어서 전시실을 좀 늘리려고 하다가 그런 면은 있고요. 그래서 전시실이 좀 부족하다는 건립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려고 하면서 예산이 같이 좀 증액된 부분은 있고요. 어쨌든 가장 큰 거는 지하 암반하고 그때 공사비 한창 인상될 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는 다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위원장 조은희 지금 지하 암반 평계만 대고 있잖아요. 틈에 전시실 같은 거, 지하 암반하면서 다른 곳도 늘려 보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검토했어야 되는 것을 뒤늦게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그런데 전시실뿐만 아니라 지하 암반, 공사비 인상 이게 다 같이 요소가 고려가 돼서, 저희가 단지 공간만 늘리려고 한 그런 요소는 아니었으니까……

○이달희 위원 원래 행정부에서 이런 건축 지을 때 기재부의 커트라인 밑으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0% 넘으면 새로 실시 변경해서 적정성 검토해야 돼서 20%에 맞췄다 이런 말씀 편하게 하셨잖아요. 맞춰 놓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했다 하듯이 처음부터 기재부의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서 수장고나 이런 것은 하면서, 우리 흔히 하는 수법이 실시설계 변경해서 건축비에 올려서 다시 하잖아요. 그런 구태의연한 과정을 답습하면서 그동안 하던 대로 그냥 해 와서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소위원장 조은희 이거 가지고 오래 시간을……

○이달희 위원 편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이달희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생 위원 제가 기자회견하다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여성사박물관이 오래전부터 여성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 이런 것들을 기리고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이게 중간에 지하암반이 발견되고, 저도 이거 중간에 암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정 말고 그냥 주의 조치로 해서 이게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가족부의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연희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면 작년에 제가 이것 좀 강하게 주문을 했고 반드시 올해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올해도 여전히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답답한데……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 현재 이게 5년째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시정에 대한 그 유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인데 추징하거나 회수하거나 원상복구할 내용이 없어서 만약에 한다면 징계 아니면 주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징계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내년도에 실시설계 끝나고 한다니까 일단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시정에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 부분도 있거든요. 이 변경은 기재부를 설득한다든가 그동안에 하던 루틴한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적극행정으로 추진하는 것도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위원장께서 시정을……

우리가 행안위에서도 결산 심의를 어제 해 봤는데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 계속 똑같은 지적이 그 이듬해에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럴 때 위원회에서 이 결산 심사를 왜 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은 없었지만 두 분 위원님께서 올해에는 꼭 실시하도록 해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답을 못 하면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정 요구가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인데 이 변경을 적극행정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정 요구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면 어떨까요? 이거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음에 9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9번, 다양성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다양성 교육 할 때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기업 다양성 교육의 최고경영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교육 이후에도 컨설팅이라든지 우수 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해서 효과성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의하는 거는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위원님들 읽으시면 되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김한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설명을 길게 안 하셔도 되도록.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9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10번,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 확대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11번, 새일여성인턴 사업 취업자 고용유지율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시정요구유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춘생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고용유지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고용유지율이 높았었는데?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지금 새일여성인턴 같은 경우는 6개월 고용유지율은 77.9%이고요. 다만 12개월까지 고용유지율이 되는 게 63.6%입니다. 이 고용유지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의 고용유지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6개월 고용유지율이 47.9%이고 저희가 78%이기 때문에 새일여성인턴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고용유지장려금제도 개선해라라는 지적인데요. 지금 현재 고용유지장려금이 몇 개월 지원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고용유지장려금은 지금 기업에 주는 게 1개월 됐을 때, 2개월 됐을 때, 3개월 됐을 때, 6개월 됐을 때, 12개월 됐을 때 이렇게 해서 다섯 번 80만 원씩 나가서 총 4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인턴한테는 6개월 시점에서 6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이거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은 논의를 좀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저희가 고용유지금을 기업에 주는 게 더 효과가 있

는지 개인에게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는지 관련 연구용역 하고 있고 그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가 어쨌든 교육……

○임미애 위원 지금 이건 기업에 주는 방식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지금은 기업에 400만 원 주고 있고 개인한테는 6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주는 식으로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런데 지금 6개월 근무하면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소위원장 조은희 그런데 그거를 1년 근무하면 주는 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그거는 1년 뒤에 하면 개인한테 좀 더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어쨌든 지금 6개월 주는 것 플러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돼서 받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받기 때문에 그 만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더 하기 위해서는 1년 후에 주는 걸로 하면 더 근무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저희가 1년 뒤에 추가로 주는 거를 더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 되지 그냥 이 자리에서 무조건 다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검토를 해 보라는 건데, 저희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소위원장 조은희 새일센터는 이명박 정부 출범하기 전에 제가 그 위원으로 해서 만든 거여서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로 딱 자르니까 6개월 이후에 실업급여 받고 그냥 다 탁 손 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이라도 하면 그 업무에 좀 능숙해져서 다른 데 가서 적응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6개월은 일이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직업 쇼핑하게 된다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제도개선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제도개선 얘기하셔서.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11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꼭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소위원장 조은희 12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12번, 직업교육훈련의 성과 관리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주의와 제도개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통일을 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제도개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12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안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13번,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중에서 대학생 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통일을 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대학생 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참여율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저도 제도개선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생들의 교육참여율이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저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안 되거든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조용수입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교육부랑 검토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을 전파해서 학적부상에 이수 여부 기록 등을 실적 가점 항목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말씀하신 게 전혀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제도개선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제도개선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13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14번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결산 심사자료 1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에 프리랜서를 포함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1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출연금 정산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미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16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17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는 시정요구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만 이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유형을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자체를 통해서 집행

하는 사업이 있고 인권진흥원을 통해서 집행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통일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달희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당사자 할머니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가족들은.....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현재 여섯 분 할머님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집행 전달 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달희 위원** 대체로 지금 어떤 상황에 계세요, 남은 여섯 분은?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달희 위원** 몇 명이 병원에 계시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병원에는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달희 위원** 다섯 분은 가족들과 계시나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다섯 분은 가족과 있거나 친지분하고 같이 있는.....

○**서범수 위원** 첫 번째, 자치단체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인권진흥원을 통해서.....

○**서범수 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시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여섯 분 계시고요.

○**서범수 위원** 여섯 분 계시는데 꼭 그렇게 나눠져야 돼요? 여가부에서 바로 해 버리면 안 되나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달 체계를 향후에 어떻게 할지.....

○**서범수 위원** 그래, 전달 체계를 향후에 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자꾸 향후에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방법은 현재는 지자체를 통한 지원 같으면 정액으로 나가는 경우, 간병비하고 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할머니들을 연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정액으로 주는 건 지자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할머니들이 필요에 따라서 써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약재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집 환경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것이 있어서 그거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방비가 매칭이 되나요? 지방비에 조금 더 플러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지방비 매칭은 안 됩니다. 월 지원금은 지방비 매칭이 안 되고 있고요. 맞춤형 지원도 지방비 매칭이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바로 여가부에서 해 버리면 안 되나?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그런데 인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할머니들 라포 형성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위원장 조은희** 그래서요, 결론?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의 지원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권진흥원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지금 그걸 가지고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일원화는 하는데 창구를 어떻게 할 건지 서법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실컷 이야기해도 두 가지밖에 검토 안한다고 그려잖아. 내 이야기는 아예 무시해 버리잖아.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아니, 저희가……

○**서법수 위원** 나 같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면 될 걸 갖다가 굳이 자기네들이 준비한 것……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그것도 같이 검토……

○**김한규 위원**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나중에 고려가 최종적으로 안 되더라도 고민은 해 보실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서법수 위원**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거는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답변이 부실하므로 주의로 갈까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17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시는데 서법수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18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18번은 보조금 등 횡령 관계자의 국고보조사업 배제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보조금이나 후원금 횡령 등과 관련된 자가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 이후에 별도 법인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의 가능성인, 지금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조금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보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이고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보조금법의 해석이라든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부분이, 명확하게 후원금 횡령을 여기다 추가하는 부분이 향후에 기획재정부의 법령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도 법인 설치라는 게요 같은 이름으로 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서 지적되었던 정의기억연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다른 부처의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다른 명의로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들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딱히 그게 제도적으로 걸러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서범수 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차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횡령한 사람이 보험금 횡령 안 하겠냐, 보험금 횡령한 사람이 국고보조금 횡령 안 하겠냐 그런 차원이지요. 그렇다면 같이 동등하게 이걸 봐 줘야 되지 국고보조금 횡령은 배제하고 보험금 횡령한 것은 배제를 안 하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률 검토를 정교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범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제 저도 대책을 따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도개선으로 가더라도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그냥 멀리 미뤄 두지만 마시고 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산 심사사료 18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인력과 예산 확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19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역량 강화 수준이 아니고요 업무가 굉장히 부담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에 실제로 인력 충원이 지체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역량 강화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의 자질의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인력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가부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지난해에 예산을 증액했었습니다. 증액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바람에 예산 증액이, 인력은 추가되지 않고 업무는 두 배로 가중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예산 증액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정춘생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예산 때 제가 없어서, 민주당이 감액했나요? 정부안 그대로 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조은희** 아니에요. 증액해서 넘겼는데, 본회의에서 우리가 증액해서 넘겼어요. 본회의에서……

○**김한규 위원** 감액이 일부 있었지요.

○**정춘생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김한규 위원** 아니, 이건 아니고.

○**소위원장 조은희** 증액을 전부 봐주지 않았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정반대로 간 거지요.

○**이달희 위원** 맞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것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20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20번,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과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권익보호기관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례 판정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법 개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자체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신매매방지법에 보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조항들이 있는데 지자체에 두는 것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량 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지자체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앙에만 두는 거라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자체들이 거부할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제가 시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위탁할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르면 다 위탁을 하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여가부가 업무를 방기 했거나 아니면 지자체를 설득할 방안을 마련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제도개선을 주장하시니까 어떻게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조용수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중앙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원래는 사례판정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을 통해서 사례판정위를 중앙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는 저희가 설득을 계속 하려고 해도 지역에서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이 끝까지 못 한다고 한다면 법에다가 중앙사례판정위원회를 중앙권익보호위원회에다가 설치해서라도 지방의 그런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법수 위원님이 발의한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도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함께 인신매매 권리보호기관 설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에 피해자로 신고하는, 권익을 요청하는 신고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지금 별도로 따로 인신매매 신고가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은 있는데 지역의 검찰이나 노동관서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식별지표를 통해서 발굴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장 조린 한 5000여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5000여 건이요. 엄청 많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건수는

무지 낫다는 거지요. 어제 제가 질의할 때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작년엔가 36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작년까지 총 31건 정도……

○김한규 위원 그러면 여가부는 결국 지자체에 둘 필요 없이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법 규정을 바꿔 달라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만약에 지역에서 계속 설치를 못 한다 한다면 중앙에라도 두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지금 지방에서 안 하는 거는 이게 설치해서 위탁을 받더라도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저희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설치하는 기관들에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전달체계가 여성정책부서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성착취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라든지 장기 적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정책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는 부분을 어려워하고 또 인신매매 관련 전담부서가 지자체에 없다 보니 이 자체를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은 관련 법안도 내셨다고 하니까 법안 논의하면서 제도개선은 논의하게 그러면 저도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법적으로 보완해야 돼요. 이게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 해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예.

○임미애 위원 범피위 이런 데서 위탁받아서 하면 될 텐데.

○이달희 위원 아니, 통합 관리가 필요한 거지. 여가부, 경찰, 여러 SOS……

○임미애 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꼭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무부 산하 조직은 이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 어쨌든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20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21번,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예산 비목 일원화 등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주의와 제도개선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사업 두 가지 비목으로 이 예산이 나눠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하나로 통일해 줄 것을 기재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일원화 적극 동의하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공단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반면에 여전 같은 경우는 벌써 예산을 소진해서 상담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배분을 달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적게 줄여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기 소진이나 이런 데는 더 줄여도 되는 거니까 그 예산편성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올해도 지금 탄력적으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주의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 제도개선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21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22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제가 뭐 덧붙이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22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사안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23번,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안정적 지원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23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부모 통계와 실적 등을 고려하여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주의 요구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사안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시정요구유형에 일부 징계가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역사업은 전용이 아니고 동일 내내역사업 안에서 사실 전용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목적에서 집행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집행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와 올해 꾸준히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자료를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정리는 해 왔습니다.

○채현일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게 2023년도, 전년도에는 불용이나 전용이나 그런 게 어땠나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돌봄수당에 있어서 불용은 좀 있었습니까마는 전용은 없었고 전용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내내역 간의 활용이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수요 예측 집행관리가 미흡하거나 사업 내에서, 같은 내역사업에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돌봄수당은 그동안 꾸준히 지난 3년간 2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는 평균 5%밖에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동일한 예산 항목 안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서비스운영기관의 좀 부족한 예산을 돌봄수당에서 끌어다 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게 된 부분이 4대보험 가입이라든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종사자 인건비 등에 활용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의 어떤 차질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돌봄수당 비용을, 물론 제도 설계를 잘못했고 예측을 못 한 측면이 있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향후에 재발 방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한 주의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 내용을 보다시피 중대한 위법이나 어떤 고의 또 반복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저 위원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돌봄수당, 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돌봄수당은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하고 돌보미 양성관리 예산이나 서비스기관 운영 예산은 과소 편성하고, 이게 20년도부터 과소 편성했습니다. 과다 편성한 것을 당겨 썼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계속 지적했어요. 김한규 간사님도 또 김남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회의 지적을 굉장히, ‘또 넘어가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2025년도에는 운영비를 10% 증액을 시켰고 내년도 정부안에는 운영비를 또 5% 증액을 시켜서 꾸준히 증액을 시키고 있어서 이 점을 시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은희 말씀하십시오.

○정춘생 위원 돌봄수당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돌봄수당 지원 기준이 좀 높아지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돌봄수당은 5% 올라가고……

○정춘생 위원 그러면 돌봄수당 예산을 더 높게, 더 많이 편성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대신에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실집행률이 낮아서, 어제도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돌봄수당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계속하면 이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스매칭이 염연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있고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의 만족도에 맞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했을 때는 저는 민간돌봄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러니까 민간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어저께 경기도 광주처럼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해야 돌봄수당의 실집행률이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임미애 위원 잠깐만, 아까 설명 중에 2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돌보미 양성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한 10% 증액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5%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맞나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를 지난해 8.5% 증액을 시켰고 아이돌보미 양성 관련해서……

○임미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26년도에는 이거 몇 % 증액시켰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26년도에는 서비스제공기관 5% 증액으로……

○임미애 위원 5% 증액이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똑같은 일이 내년에 또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8.5%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25.4%가 초과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돌봄수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집행을 한 거냐 내지는 과다 편성을 한 거냐, 그래서 왜 이걸 자꾸 당겨다 쓰는 거냐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정도로 인상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사실 돌보미 척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제공기관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심을 해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게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사실 가구당 주는 돌봄수당은 예산을 늘리기가 쉬운데 운영비는 초기에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 시설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매년 인상 폭을 많이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되게 상습적이에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지금 이 상황이면.

○소위원장 조은희 맞는 말씀이에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냐는 거지요.

○김한규 위원 위법·부당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국회에다가 상황을 설명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추경은 쉽지 않더라도 그러면 다른 절차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얻는 게 그래도 적정했는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궁금한 건,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이라는 게 아까 4대보험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안 지급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김한규 위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김한규 위원** 그러면 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규정상 여가부가 재량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지난해에는 사실은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들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비중이 좀 있었고요. 예측하지 못했지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수당이.

○**김한규 위원** 그러면 조은희 간사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사전에 그런 상황을 듣고 이번에 그렇게 써야 되니까 국회에 보고를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은희** 저도 없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추경 시도를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이게 사실은 추경의 사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내내 역 간에 같이 쓸 수 있는 사업비의 항목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국회 보고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말이 안 되지요.

국가재정법 제46조를 보세요.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요? 그런데 예산편성과 별개로 돌봄수당 등 3개 사업 내용을 통합 집행 의결했던 말이지요. 이게 취지와 다르게 수년간 자의적으로 전용해서 우리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채현일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같은 사업 내에서 세부 사업에 예산을 약간 그렇게 쓴 거잖아요. 이걸 전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이 사업이 명백하게 내내역사업이니까 전용에 해당되는 사업인지가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사업이 한 개의 내내역으로 편성된 것부터 약간……

○**채현일 위원** 내내역이잖아요. 그래서 전용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과한 측면이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내용을……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돌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여가부에서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아이돌봄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세부, 물론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를 잘못한 측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복하면 안 되고. 그러한 전제하에 그거를 징계까지 과도하게 한다는 거는, 징계 같은 경우는 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가 있거나 또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지만 좀 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좀 성격이 다른 걸 말씀하신 내내역 예산으로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하튼 편성을 그렇게 했고 내내역 간에 이렇게 용도를 옮겨서 쓰는 걸로 다른 부처,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징계 권고를 한 적이 있나요? 선례가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징계까지는……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요. 이 부분은 오후 3시 이후에 차관님 오시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 사례를 좀 제대로 확인해 봐 주세요.

○채현일 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김한규 위원 그다음에 징계 의뢰가 되면 실제로 부처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저희가 징계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 규정도 내내역 간에 옮기는 건 문제가, 선례상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규정이랑 확인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관님이 불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에 연락하셔서, 우리가 속개할 때니까 3시에는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연락은 됐는데 3시에도 참석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전체회의 때 사정을 좀 해명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3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지금 바로 끝내는 거예요? 오전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조은희 저는 차관하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3시에 하시면 어때요?

○소위원장 조은희 그냥 여기서 마치시지요.

○김한규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게 3시에 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3시에 하는 건 좋 은데 괜찮으시면 진도를 좀 빼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30번까지 진도를 빼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26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원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 규모에 상응하지 못해서 실지급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영아돌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올해는 사업이 무난히 집행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가능하시다면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거 25번하고 26번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요?

○정춘생 위원 27번까지 다 한꺼번에……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28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5, 26, 27은 오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28번,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조은희 28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29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30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역의 지특회계라고 지역자율사업계정상 저희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그동안 삽감하지 못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신다면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식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31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32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33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34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35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36번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부터는 청소년정책관인데……

○김한규 위원 다 제도개선인데 그래도 죽 하시지요, 어차피 오후에 하는 건 동일한 거니까.

○소위원장 조은희 뒤에 주의인데. 주의, 주의가 있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은희 37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37번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38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주의를 수용합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김한규 위원 주의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39번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40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41번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42번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43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44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4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46번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47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은희** 예.

○**임미애 위원** 이 문제는요, 여가부의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와 다르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임미애 위원** 이거 반드시 현실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이거는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문성을 여가부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거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다음 질의가 사회복지시설 관련이라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은희** 48번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청소년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를 8.7% 증액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임미애 위원님, 되셨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은희** 이거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48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합의가 잘 안 되는 사안이 4건이 있었는데요. 4건은 잠시 정회 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한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여가부차관이 3시에 못 온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은희** 그거는 제가 정회시간에 좀.....

○**김한규 위원** 왜냐하면 차관 오는 것 때문에 3시에 다시 하는 건데, 차관의 몸 상태는 저는 모르겠는데 안 오겠다는데 그냥 3시에 다시 꼭 하셔야 되나 해서.....

○**소위원장 조은희** 그리고 이 내용이 징계 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참석 가능한 위원들을 지금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저도 좀 힘들고 아마 다른 위원님.....

○**김한규 위원** 길지 않게 하면 저는 가능은 한데.....

○**소위원장 조은희** 짧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결론을 좀 다 내서 만나도록 하지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1시간 내에 끝내는 걸로 3시에.....

○**소위원장 조은희** 당연하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3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가족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1차 심사 때 유보되었던 내용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8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가 별자로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단계별 변경 경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총사업비 268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22년도에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설계 과정에서 지하 암반이나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 요인이나와서 저희가 조달청 적정성 검토 후에 기재부에 총사업비를 363억으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의 요청 규모가 물가 변동을 제외했을 경우에 18.65%여서 20%를 넘지 않아서 적정성 재검토 대상은 아니었는데 기재부에서 재량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1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예산 집행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가 작년 11월에 끝나고 실시설계를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 마쳐서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오전에 시정이냐 주의이냐 제도개선이냐를 두고 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한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여가부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건데 물가 변동 제외하고 18.65% 올렸다라는 것은 20% 미만이니까 원래 적정성 재검토 필수 증액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 김한규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뭐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잘못해서 시정, 주의 하자고 하는데 뭐를 잘못했고 뭐를 시정하실 거예요?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저희가 잘못했던 게, 사업이 좀 지연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업 중단됐던 그것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지연 없이 절차대로 이행할……

○ 김한규 위원 아니, 국장님 사업 지연은 결과고 지연시키는 데 여가부의 책임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기재부가 징계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연시킨 건 기재부 아니예요? 왜냐하면 적정성 재검토 의무사항도 아닌데, 요건 20% 미만인데도 본인들이 굳

이 이거를 재검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재부 잘못은 별개로 하고 여가부가 책임 있는 부분을, 여가부에서 생각하시기에 그 결과 자연된 게 여가부 책임이 맞아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저희는 큰 책임은 없다고 보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약간 단기간으로 이렇게 잡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조금……

○김한규 위원 그러면 기간을 무리하게 단기간으로 여가부가 잡으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초반에 저희가 21년에……

○김한규 위원 21년에 초반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소위원장 조은희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국립 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4년 내내 사업 추진이 부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을 너무 급하게 잡았던 게 잘못이지 나머지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마음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짚어 드릴까요? 해당초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랬더면서요. 그런데 사실 자문위에서 하기 전에 여가부에서 계획을 똑바로 세웠어야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암반이 나왔다…… 암반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암반이 나왔다 쳐요. 그래,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해요. 그러면 공사비 증액에 따른 그것을 기재부에 가서 의논을 하고 우리 여가위에 와서도 의논을 해서 빨리 통과되도록 해야지요. 이때까지 있었던 잘못은 작년에 우리가 충분히 지적을 하고 예산을 넣어 줬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안 된 거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이 없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저는 그 말씀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기재부에서 1년간 사업 적정성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협의하고 그랬어야 되는 면은 있는데 그래도……

○소위원장 조은희 면은 있는데 그런데 잘못은 없어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소위원장 조은희 아니, 작년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해서 우리가 예산을 태운 거잖아요. 작년에 저하고 이연희 위원님하고 그냥 거의 우기다시피 했어요, 김한규 간사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몇 번씩 받고 했어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리액션이 있어야지요.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되고, 기재부 때문에 우리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여가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제가 됐던 기간은 23년 12월부터 24년 작년 11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4년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못 된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25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3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을, 장기간을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조금 자연시킨 그 부분이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당초에 19년도에 사업계획 할 때 24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그 부분이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드러나면서 4년 이상 사업 기간이 자연된 부분도 당초 사업 계획 할 때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실장님 답변에도 지금 합정이 있는 거 아세요? 작년에 예산 올려 준 거는 아니고 그것은 잘되고 있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제대로 하라고 한 거랑은 상관이 없어, 이것은 그 전의 것 예산이니까 사실은 작년에 통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자락을 깔고 계세요.

작년에 예산을 했던 것은 작년 한 해를 열심히 뛰라는 거였지. 그런데 안 뛰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거의 잘못이 없음’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임미애 위원** 지금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받고 계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임미애 위원** 아직 안 끝난 거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안 끝났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이 정도가 적정하냐를 검토받는 건가요?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이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사업비랑 사업계획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설계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 설계. 그러면 여기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현재는 없다고 보는데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면 곧바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진척된 건 없어요. 이제 조달청하고도 적정성 검토 다시 해야 되지 10월 달에 기재부하고도 다시 해야 되지, 그리고 나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이때 다시 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그러니까 조달청 적정성 검토가 올해 한 9월, 10월까지 끝날 예정으로 저희가……

○**임미애 위원** 다 합쳐서?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아니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조달청하고 기재부하고 다 합쳐서 10월이면 2개 다 끝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아닙니다.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는 10월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임미애 위원** 이게 또 지난번처럼 1년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지금 그런 요인은 저희가 없다고 보는데.

○**임미애 위원** 없다고 보시나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예, 지금 어쨌든 물가상승비하고 공사비 예상되는 것 그 정도 요인으로, 그동안 있었던 요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정계 수위를 시정요구유형을 합의해서 정하고 난 다음에 역사박물관 관장님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위원장실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각 위원님들 실에 보고해 주시고 저는 박물관장님이 저한테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여가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요구를 어떻게 하실지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저도 사업 진행 상황을 오늘 처음 보고 받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정부이기는 하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처 내에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전체 내에서 여가부에 대한 태도도 이런 문제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적정성 검토가 정말 1년씩이나 걸리고 이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실무자로 일했을 때 보면 기재부가 여가부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굉장히 얇잡아 보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여성가족부가 막 성장하고 커 올 때는, 전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 줄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의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 때까지는 여가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여가부의 문제만으로 시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위원장님께서 문제 지적하신 것 저는 다 정당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소위원장 조은희** 정춘생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좀 삼가시지요.

○**정춘생 위원** 예.

어쨌든 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를 해서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이후에는 이 검토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예정대로 착공이 진행이 돼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면서 점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저 예산심의를 하면서 총사업비 30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다른 탈법을 쓰고 편법 쓰는 것은 봤는데요. 어제도 행안위 결산 할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징계를 하자 말자 하다가 말았는데 조달청 적정검사에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거는 나는 처음 봐요. 이 사업 안 된다는 거잖아.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위원님, 조달청 적정성 검토가 아니고 기재부의 총사업비에서……

○**김한규 위원** 기재부에서 걸린 거 아니에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적정성 다시 해야 됩니까? 검토 다시 해야지요. 지금 한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지금 실시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범수 위원** 실시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사입니까? 여하튼 어찌 됐든 간에 사업 전체에 대해서 실시설계든지 중간설계든지 간에 조달청 적정성 검토에서 뭐가 좀 빠거덕거리고 아래 한다는 건 나는 처음 봐요.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3시 반에는 끝낼 생각입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고 시정요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이 있으시면,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저는 시정 해서 한번 전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으나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정조치를 주의 정도로 주고 그리고 이 사업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과한 징계를 할 경우에 의혹이 떨어질까 봐.

○소위원장 조은희 들었습니다.

김한규 간사님.

○김한규 위원 저도 주의 정도가 적정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에 있는 거의 비슷한 사업, 똑같이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로 금액을 낮춰 준 사례가 또 있거든요. 이게 지난 기재부가 비슷하게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서, 여가부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것을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주의 정도로 앞으로 잘하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음 올려서 징계합시다.

○소위원장 조은희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저는 아까처럼 사업 추진 방식 변경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체계를 갖춘다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정을 해도 팬창을 것 같습니다. 그 항목은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과 이달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주의 정도로 가는 걸로 또 인커리지(encourage)를 하는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해 주셔야 됩니다.

○서범수 위원 속기록에 나는 징계하자고 한 것으로 해 주세요.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25번에서 27번, 30쪽에서 32쪽입니다.

25번에 대해서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두고 저희들이 의견 합의를 못 했는데요. 정부 측 의견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는 당초 징계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동일 세목, 그러니까 내내역사업이라서 사실은 전용이나 보고 대상이 아닌 것을 양해를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신 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전용이나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25년에는 운영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김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 생기면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내내역이니까 이렇게 옮겨서 쓰실 거지요? 아니, 문제가 없는 거라면서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

요. 규정상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지방에 내리는 지침에 좀 더 명확하게 운영비 내에서 쓰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제도개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김한규 위원 아니, 예산이 또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내년 예산이 5%밖에 안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전용한 게 20%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업비로 4대보험료 같은 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20% 정도 올려 주지 않는 이상 또 발생할 텐데 그거 그냥 지침을 줘 갖고 예산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운영비가 사실은 올해 8.5% 올랐고 내년에 5% 올라서 상당히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는데 그리고 내년도 지침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정 당국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단계 양보를 해서 시정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조은희 징계는 공무원들한테 좀 과하니까……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 내용 봐 갖고는 저는 징계하고 싶어졌는데. 오기 전까지는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시정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시정으로 가겠습니다.

26번, 돌봄수당 예산 시정과 주의 중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아까 설명을 못 듣고 넘어갔거든요. 26, 27 부처 설명부터……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돌봄수당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아돌봄 수당을 도입했고 지난해 교통비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소진이 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한번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현장에서는 영아돌봄이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중복 사업이라서 이럴 거면 여가부가 이런 사업 아예 손을 놓으세요.

○임미애 위원 이게 돌보미와 관련해서요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 결국 수요조사 해 가지고 예산 책정한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3년마다 아이돌봄 실태조사를 하면 당연히 수요는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잡은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처우가 좋은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돌보미들이 들어오셨다가 금방 나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대기만큼 저희가 공급을 못 해, 이용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수요에 비교해서 공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예산이 자꾸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문제는 결국 수요조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요조사를 시도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영아수당을 신설했고 내년에는 또 유아수당도 신설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시정 요구했는데 저는 주의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주의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27번 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이 건은 앞의 건과 연장선상에서 아침에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27번 사안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생 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도개선이 아니고 주의를 수용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앞에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상황……

○정춘생 위원 연계돼서. 그렇더라도 민간서비스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민간서비스기관에 돈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그 차액 있잖아요, 공공한 차액 정도만 해도 이게 연계 서비스가 잘돼서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광주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여가부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말씀하신 자체 사례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자체에 내려보내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까? 중간에 한 번씩 자체 관계자들 다 모아 가지고 예산집행이 어찌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한 번씩 평가회의 같은 것을 합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작년에도 자체를 불러서 집행을 독려했고요. 그리고 자체 평가지표에 이것을 넣으려고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나

는 여가부에서 사업을 그냥 던져 놓고 안 챙기는 것 같아.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아이돌보미가 300명이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관리 인력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1개의 서비스제공기관, 시군구에서 300명 이상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수 제공기관을 만들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시흥시라든지 구미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데가 복수 기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걸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대기가 조금 많은 기관은 서비스제공기관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 독려하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군이나 도에 있다 보면요 실제로 수요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필요한 규정들 때문에 수요자가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독려를 얘기하실 때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수요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지를 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정이라면 그거를 과감하게 고쳐야 이게 집행률이 높아질 겁니다.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시도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지금 정부 측에서는요 위원님들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세요.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또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돌봄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여가부장관이 새로 오시게 되면 기재부장관을 만나셔서 협의를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가위원장이 기재위원장과 만나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잘 만드셔서 여가위원장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걸 부대의견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동의하고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위원님들 입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정요구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정리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변상 몇 건, 징계 몇 건 이거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한다는 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는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는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부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 위원(4인)

김한규 서범수 이달희 이연희 임미애 정춘생 조은희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권익증진국장 조용수

대변인 최문선

정책기획관 김권영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